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번호	구분	인력기준	시설・장비기준
1	공통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책임자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 제142조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설계・제작 또는 검사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실(장비실 포함)
2	종합자율안 전 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후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는 취급업무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산업기사 자격은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학교 또는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전자・화공・산업위생・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관련학위를 취득한후(법령에 따라이와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당기계・기구의취급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이와 같은 수	가. 회전속도측정기 나. 비파괴시험장비 (UT, MT, PT) 다. 와이어로프 테스 터 라. 표준압력계 마. 소음측정기 바. 접지저항측정기 사. 진동측정기 아. 절연저항측정기 자. 절연저항측정기 자. 절연저항략측정 기 차. 프레스급정지성능 측정기 카. 만능회로시험기 타. 수압시험기 파. 로드셀 또는 분 등 하. 분진측정기 거. 풍속계 너. 피치, 틈새 및 라 어캘리퍼스, 마이

		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 기계 · 전기 · 전자 · 화공 · 산업위생 · 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당 기계 · 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고등학교에서 기계 · 전기 · 전자 또는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해당기계 · 기구 및 설비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해당기계 · 기구의취급업무에 9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성능검사교육을이수하고,해당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비파괴검사분야의기능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경력이 3년이상인사람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승강기기능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 후해당분야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더. 수준기 러. 검사용 공구세트 머. 라인스피드미터 버. 가스농도측정기 서. 기밀시험장비 어. 안전밸브시험기구 저. 산업용 내시경 처. 조도계 커. 가스탐지기 터. 초음파 두께측정 기 피. 스모크테스터 허. 청음기 또는 청음 봉 고. 표면온도계 또는
3	기계 분야 (제78조제1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 호부터 제13 호까지의 안 전검사대상 기계등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제2호의 시설·장비기준란 나목(UT만해당한다), 라목, 타목, 하목, 버목부터 저목까지, 커목 및 퍼목부터 도목까지의장비를 제외한 장비
4	장치 및 설비 분야(제78조 제1항제5호 의 안전검사 대상기계등 으로 한정한 다)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5	국소배기장	제2호의 인력기준란 다목 및 라목의 요건	1. 스모크테스터
	치	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 청음기 또는 청음
			봉
			3. 절연저항계
			4.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5. 정압 프로브가 달
			린 열선풍속계
			6. 회전계(RPM측정
			7])